

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(앞쪽) 측정요청일자 + 7일	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 (전화번호)					
어선내역	어선번호		어선의 명칭			
	선 적 항		진수연월일 년 월 일			
재화중량톤수 또는 계획톤수			톤			
측정(재측정)을 받으려는 일자			년 월 일			
측정(재측정)을 받으려는 장소						

「어선법」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
대 한 민 국 영 사

첨부서류	1. 일반배치도 2. 선체선도 3. 중앙횡단면도 4. 배수량 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	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○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한 최대적재량을 확인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